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3,712,304	19,911,369
일반회계	600,569,500	18,017,085
특별회계	63,142,804	1,894,284
공기업특별회계	30,342,700	910,28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857,114	565,7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485,586	344,568
기타특별회계	32,800,104	984,00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97,600	77,9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52,340	70,57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288,000	8,64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28,664	30,860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675,000	110,2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도시개발특별회계	2,110,000	63,3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95,624	14,869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3,263,700	97,911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8,438,000	253,14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35,309	82,059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5,615,867	168,47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88,26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금(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